

食品衛生法 施行令 公布

대통령령 제12,000호(86. 11. 11公布)

調 査 部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집단급식소의 범위) 법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 3 조 (제품검사) ①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여야 하는 제품은 첨가물중 타알색소·타알색소제제·보존료 및 보존료제제로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제 4 조 (수출식품등의 검사)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보

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위생사·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영양학·위생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가공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 1호 또는 제 3호와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교육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 6 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별 제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4. 입점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7. 식품위생관리인·조리사·영양사의 법령준수 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압류·폐기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제 7 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 가. 과자류제조업 : 곡분·당류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떡류·사탕류·과자류를 제조하는 영업
- 나. 당류제조업 : 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엿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다. 아이스크림류제조업 : 아이스크림·빙과류 또는 분말아이스크림류등을 제조하는 영업
- 라. 유가공품제조업 : 우유·산양유를 처리하거나 우유·산양유 또는 이의 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살균·건조·발효·혼합·정제 기타의 방법으로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이즈등을 제조하는 영업
- 마. 식육제품제조·가공업 : 식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소세이지·베이컨·알가공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바. 어육연제품제조업 : 어육 또는 고래고기등을 주원료로 하여 어묵 기타 이와 유사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 사. 절임식품류제조업 :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소금·간장·설탕등으로 절이거나 졸여서 단

무지·젓갈류·콩조림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 아.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 식품을 빈통 또는 병안에 넣어 밀봉한 후 병원균 및 부패세균을 가열·살균처리하여 내용식품 고유의 품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다만, 다른 식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식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 자. 건포류제조업 : 어육 또는 조개살을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 차. 두부류제조업 : 두부·유부·묵등을 제조하는 영업
- 카.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타. 면류제조업 : 건면·숙면 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라면등의 인스탄트면류를 제조하는 영업
- 파. 다류제조업 : 식물성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홍차·녹차·생강차·커피등과 같이 물에 녹여서 마시는 기호성식품과 이들을 원료로 하여 만든 농축액 및 직접 마실 수 있는 액상다류 또는 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
- 하. 청량음료제조업 : 탄산음료·유기산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과채류음료·곡류음료·혼합음료등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다만, 무지유 고형분 3퍼센트이상인 음료 및 보존음료수를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 거. 보존음료수제조업 : 광천수 또는 지하수를 마시기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하는 영업
- 너.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 더. 영양등식품제조업 : 식품에 영양성분등을 첨가하거나 제거하여 유아·병약자·임산부 등의 건강증진의 용도에 제공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
- 러.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서 맛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류·식초·소오스·케첩등의 조미

식품(다른 식품의 가공·조리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직접 먹는 조미식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영업

머. **식품가공업** :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임가공업,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반제품제조영업, 농산물·수산물을 그 원형을 알 수 없도록 분쇄·절단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부형제와 첨가물을 넣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혼합하는 단순가공업, 기타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분 또는 임가공하는 영업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영업을 제외한다)

버. **식용얼음제조업**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 등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영업

서. **도시락제조업** :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어. **주류제조업**

저. **식품소분업**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서 재포장하는 영업

2. **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등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

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4. **식품판매업** : 식육·식용얼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유산균음료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익혀서가공처리한 면류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과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 포장육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5.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6.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뚜껑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7. 식품집객·조리판매업

가. **대중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탕반·면류·도시락등을 조리판매(이동식 판매를 포함한다)하며, 간단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대중음식점과 갯죽·깨죽등 죽류와 인삼차·쌍화차등 다류(커피를 제외한다)만을 조리판매하는 인삼찻집으로서 나목의 유흥음식점영업 내지 마목의 휴게실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업

나. **유흥음식점영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음식점(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비어홀·살롱·룸살롱·요정과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간이주점등)과, 무도유흥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음식점 또는 무도유흥음식점) 영업

다. **과자점영업** : 객석을 갖추고 빵류·생과자류·떡류·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우유·아이스크림류등을 갖추거나 제조하여 영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영업

라. **다방영업** :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우유·청량음료 기타의 음료수(주류를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영업

마. **휴게실영업**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부대시설이나 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실, 유원지등에서 대중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

적으로 하는 영업

제 8 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 7 조 제 7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부
2. 댄 시
3. 가 수
4. 악기를 다루는 자(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식점 및 관광사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소내의 음식점에서 안락한 식사분위의 제공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무용을 하는 자
6. 만담 또는 꼭예를 하는 자
7. 유흥사회자

② 제 1 항 제 1 호의 유흥접객부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제 9 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등) ① 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제 7 조 제 1 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내지 제 3 호의 식품운반업(그 자신의 제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5 호의 식품보존업 및 제 7 호의 식품접객·조리판매업으로 한다. 다만, 주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을 제외한다.

② 제 7 조 제 1 호머목의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업·반제품제조업·단순가공업 및 기타 식품가공업으로, 제 7 호 가목의 대중음식점영업은 대중음식점 및 인삼찻집으로, 동호 나목의 유흥음식점영업은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으로 각각 구분하여 허가한다.

제 10 조 (영업의 허가관청) 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제 7 조 제 1 호 타목의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과목의 다류제조업·하목의 청량음료제조업·거목의 보존음료수제조업·더목의 영양동식품제조업, 제 2 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제 5 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영업허가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행한다.

제 11 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 22 조 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당해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 12 조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 ① 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제 7 조 제 1 호의 영업중 거목의 보존음료수제조업, 버목의 식용얼음제조업,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및 저목의 식품소분업을 제외한 영업
2. 제 7 조 제 2 호의 첨가물제조업

② 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 허가(품목제조변경의 허가를 포함한다)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 행한다.

제 13 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법 제 2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영업은 다음과 같다.

1. 제 7 조 제 4 호의 식품판매업
2. 제 7 조 제 6 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14 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대상업종)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은 제 7 조 제 1 호 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내지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동조 제 2 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 제 7 호 나목의 유흥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 15 조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업종) 법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7 조 제 1 호 가목의 과자류제조업 내지 동호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및 동조 제 2 호의 첨가물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상시 2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통조림·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 유가공품제조업 또는 식육제품제조업을 하는 영업자는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 상시 2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또는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절임식품제조업 중 시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영업, 식용유지제조업 중 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압착식용유지제조영업, 식품가공업 중 임가공업,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 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3년이상 식품제조·가공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법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1종식품위생관리인과 2종식품위생관리인으로 구분한다.

1. 1종식품위생관리인은 제 5조 제 1항 제 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거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축산가공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제조·가공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2종식품위생관리인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공업·식품공업·수산가공·식품생동 또는 통조림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비치
6.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7.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등) 집단급식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1. 제 7조 제 7호 가목의 대중음식점 다만, 한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서 탕반(복어를 재료로 하여 조리하는 음식물을 제외한다)과 분식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인삼차집 및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음식점을 제외한다.
2. 제 7조 제 7호 나목의 유흥음식점, 다만, 일반 유흥음식점 중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간이주점과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점을 제외한다.

제19조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①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느 집단급식소로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시 1회 급식인원 300인미만인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의 철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사회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4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동의서
2. 창립총회의 회의록
3. 정 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명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8.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제29조 (지구등) ①법 제4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지구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조합의 운영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별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하나의 지구로 하거나 2이상의 시·군·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전국을 하나의 지구로 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은 2이상 설립할

수 없다.

제30조 (연합회의 설립) 법 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동업자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3분의 2이상의 동의서와 제28조 제 2호내지 제 8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의 위생관련 공동사업
2. 영업에 대한 경영개선연구
3.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4. 조합원의 위생시설개선지도
5. 영업의 경영지도
6.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7. 조합운영 및 시설개선사업의 지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8. 제 1호 내지 제 7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면) ①법 제5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자율지도원의 직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 또는 연합회의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조건부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지도
4. 무허가업소에 대한 적발 보고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하 "당연회원"이라 한다)이 되는 영업자는 가입연도 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그 회원인 영업자와 협회의 회원인 법인의 회원인 영업자를 제외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회원의 영업자는 협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협회의 회원(이하 "임의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회원은 당연회원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35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5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적업자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2. 기타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법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품목제조허가취소·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처분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서를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서는 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별·정도등

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벌포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9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식중독 원인의 조사) 법 제6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과 같다.

1. 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에서 그 원인물질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적 조사
2. 중독된 자 또는 중독된 환자로 의심되는 자의 혈액·분뇨와 토물 또는 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세균학적 또는 이화학적 시험에 의한 조사

제41조 (식중독에 관한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6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법 제71조 제 3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위생정책개발사업
3. 식품의 영양성분 조사사업

제43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 (기금의 운용계획)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기금용자업무의 위탁관리) 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용자업무계획의 승인)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용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용자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금용자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용자금리등) 기금에 대한 이자율, 용자금리, 용자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 (대여기금의 납입 및 수납) ①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용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상환받은 용자금 및 그 이자를 수납한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상환받은 용자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채무관과 세입정수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장·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기금계정) 보건사회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1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처분) 보건사회부장관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금지에 관한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명령·처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 (권한의 위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중 제 7조 제 1호 사목의 절임 식품류제조업, 자목의 건포류제조업, 카목의 식용유지제조업, 타목의 면류제조업, 러목의 조미식품제조업 내지 서목의 도시락제조업, 저목의 식품소분업, 제 3호의 식품운반업, 제 4호의 식품판매업, 제 5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제 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및 제 7호의 식품접객·조리판매업에 대한 법 제17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법 제69조 및 법 제78조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유가공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3 조 (허가관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고대상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식품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업종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자류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전포류제조업 또는 식품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변경된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업종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해당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 (도시락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도시락을 조리·판매하는 자가 이 영 시행후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도시락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식품공업협회 당연회원가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의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한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기준(전년도 매출액)	영업정지 1월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
1	2천4백만원 미만	1만원
2	2천4백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만5이원
3	5천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	2만원
4	7천5백만원 이상-1억원 미만	3만원
5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만원
6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만원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만원
8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만원
9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8만원
10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9만원
11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0만원
12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11만원
13	500억원 이상	12만원

전기한등 고는마음 애국하는 밝은마음